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종교단체 대표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1.)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2(2021.6.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3.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지원을 위하여 2021.7.1.부터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단체 소속 종교시설 이용자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 예방접종 완료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